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212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원

담당변호사 엄기은, 임영기

변론 종결2022. 12. 7.

판결 선고2022. 12.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7.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0. 접수 제320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20. 05. 19.	2023. 05. 18.	95,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20. 12. 03.	2025. 12. 02.	145,800,000원
합계	240,800,000원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대출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출금액을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제1보증	D은행	2020. 5. 20.	100,000,000	2021. 11. 10.	66,040,975
제2보증	E은행	2020. 12. 10.	162,000,000	2021. 11. 16.	133,773,116
합계	199,814,091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21. 7.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0. 접수 제3201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인 채무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1)

적극재산	총주시 F	74,29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총주시 G	67,575,000원		
총주시 H	18,207,000원		
총주시 I	1,330,760원		
총주시 J	12,598,400원	처분행위와 같은 날 제3자에 처분	
이천시 K, L호	435,000,000원		
합계	609,001,160원		
소극재산	채권자	채무액	비고
원고	199,814,091원	이 사건 피보전채권	
피고	55,000,000원	2020. 2. 3. 25,000,000원 대여 2020. 4. 27. 30,000,000원 대여	
M조합	110,00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97,709,729원		
N	625,420,000원		
O 주식회사	91,467,725원		
P 주식회사	126,224,223원		
합계	1,505,635,76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 및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B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1. 7.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E은행에 대한 대출금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약 4개월 남짓 지난 2021. 11. 10. 및 2021. 11.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인 E은행, D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21다20293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시중 은행금리보다 이자를 잘 쳐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위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B에게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던 B가 당시 소속 근로자였던 피고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제안하며 금전차용을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은 B의 신용상태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고, ② 을 제1호증의2, 제2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 B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B가 위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처분행위 당시 피고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0. 접수 제320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민영

별지

현실화 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배제하더라도 B의 채무초과상태에는 영향이 없다.